

지방계약법의 개정내용 해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서기관

최두선

지방계약법령의 조문별 개정내용 해설

지난해 4월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대한 조문별 해설에 이어서 이번호에서도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다. 제한경쟁입찰은 경쟁 입찰 방법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로서 지역제한 입찰, 실적제한 입찰, 기술제한 입찰,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입찰, 시공능력으로 제한하는 입찰 등 제한의 방법이 매우 다양하며 지난호에서는 실적제한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며 이번호에서는 지역제한 입찰부터 살펴보자.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지역의 범위가 행정구역상 시·도를 의미한다. 가령 A군에서 10억 원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공사현장이 A군에 있다면 A군을 관할하는 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할수 있다.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로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 입찰참여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지역사업자가 되기 위하여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까지 해당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주된 영업소”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소재지를 의미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업종에 대하여 지역별로 사업장 소재지를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주된영업소”를 미리 정해야 하며 주된 영업소재지에서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수의견적입찰의 경우에도 지역제한의 개념을 적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경쟁입찰에서의 지역제한과 수의 전자견적입찰에서의 지역제한을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

(경쟁입찰과 수의전자 견적입찰의 지역제한 방식 구분)

구분	일반입찰	수의견적 입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 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 7억원, 기타 공사 5억원 미만) • 물품·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발주 3억원 -시군구 발주 5억원 -건설기술용역 1.9억원, 안전진단 1.5억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 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 2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하
제한방법	공사현장 및 물품 및 용역등의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단위로 제한할수 있음(임의규정)	공사현장 및 물품 및 용역등의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단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연접시군으로 제한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처리장 등으로 제한이 가능함
중복제한 여부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지역제한과 실적제한,지역제한과 기술제한만 가능 물품납품의 경우 지역제한과 중소기업자로 제한만 가능	지역제한과 병행하여 실적, 규격, 재질, 인력보유상황, 장비나 시설의 보유, 시공여유, 제조또는 처리공장,기타 계약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할 수 있음.

위 표에서 알수 있듯이 수의전자 견적입찰의 지역제한은 시군단위까지 제한이 가능하며 지역으로 제한을 하면서 규격이나 시설또는 제조 공장, 기타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중복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수의견적입찰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견적을 받지만 수의계약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입찰공고일 전일현재 그 지역에 소재하여야 하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나 계약체결일 이후에는 다른지역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일부업체들은 이러한 지역제한의 맹점을 악용하여 수주만을 위하여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경쟁입찰의 경우 해당지역 (시도) 영업활동기간을 평가하여 이른바 철새업체(paper company)의 난립을 방지토록 하고 있으며 특별 재난지역에서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전자견적서 제출의 자격을 재난발생일 이후에 재난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업체는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당해발주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견적제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기술제한 경쟁입찰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에서 관련조문 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제20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 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제2호의 경우에는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란 지난호에서 소개된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예규(227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별표 1)에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29개 종류의 공사와 특수한 공법이요구되는 2개의 공사를 의미 한다.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는 29개 공사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심의회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에 대하여 “기술의 보유상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기술의 보유상황은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에서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 기술제휴 방법으로 당해공사 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이나, 기타 당해공사의 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에 대하여 이를 보유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할수 있다. 기술용역의 경우에도 면허나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이외에 고급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할 수 있다.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대하여 제한요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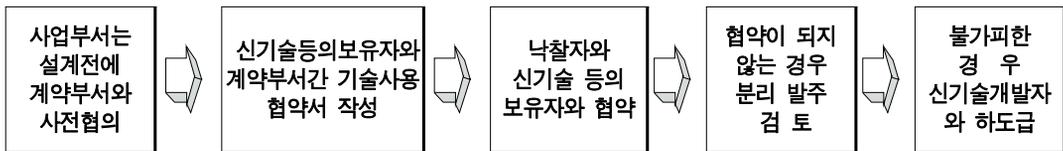
먼저 사업부서에서는 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면서 특정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설계반영 이전에 사업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이유는 특허나 신기술을 설계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반영하는 경우 특허나 신기술 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의를 하지 않으면 입찰의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설계에 반영하기 이전에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와 신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자 간에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이 완료되면 아래서식에 의하여 협약서를 작성한 후에 신기술이나 특허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번째로 발주부서에서는 기본 또는 실시설계 전에 특허나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기술이나 특허의 개발자와 신기술(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자에게 기술사용 협약서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간에 기술사용 협약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번째로 만일 신기술(특허) 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른 신기술의 사용을 검토해야 하고 특허나 신기술이 포함된 부분만 분리발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번째로 만일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장비 등을 직접사용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면 특허나 신기술의 개발자가 하도급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장비의 사용 등을 신기술개발자가 아니면 기술적·법률적으로 다른 사업자가 신기술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발주자와 신기술등의 보유자간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예시>

- 신기술(특허)명 :
- 발주자(갑) :
- 신기술(특허)개발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공사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와의 협약체결) 이 협약에 따라 “을”은 위 사업의 낙찰자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이 부분만의 (기술사용,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4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공사원가계산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를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를 곱한 금액을 공사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또는 “낙찰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지급받고 “을”이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또는 “낙찰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낙찰자”로부터 해당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을”은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적정한 공사금액(예시 : 기초금액에 8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을 “낙찰자”와 “을”이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을”은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동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6조(세부사용협약 체결) 위 공사의 “낙찰자”와 “을”은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을”의 귀책사유로 세부사용협약서의 체결이 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사용협약서가 체결된 경우라도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다른 신기술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특허)개발자) (인)

다음은 용역의 경우 기술보유 상황으로 제한 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하자 . 제한 경쟁 운영요령에 용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용역의 경우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한다면 설계나 안전진단, 감리용역의 경우 기술인력, 가령 특급 기술자를 보유한 사업자로 제한 할 수도 있을 것 이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신기술로 제한 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다음은 시공능력 공시액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시공능력 공시액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공사에만 해당된다.

시공능력 공시액 이란 공사업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연간 매출액등을 감안하여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건설공사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매년 7 월경 업체별로 시공능력 공시액을 발표하고 있다 시공능력 공시액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시공능력 공시액의 2배 이내에서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공능력 공시액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 공동도급으로 입찰을 참가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입찰자의 자격유무를 판단하는지 알아보자.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능력 공시액에 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구성원별 시공능력 공시액을 산정하며 구성원 모두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합산한 금액이 제한금액을 초과하면 입찰참가 자격을 갖게 된다.

예를 들면 A업체 공시액 500억원, 시공참여 지분을 50%, B업체의 공시액 400억원 시공참여비율 50%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시공능력 공시액 450억원 이상인 자로

제한한 경우에는 위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까?

위 공동수급체는 A업체 시공능력 공시액 250억원 B업체의 시공능력 공시액 200억원 ,이를 합산하면 450억원에 해당되므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시공능력 공시액으로 제한하는 입찰은 지역제한 입찰과 중복하여 제한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시공능력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그리 혼치가 않은 편이다.

다음은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여기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중 매년 고시하는 물품이 있으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동 고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경우와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것은 중복제한 금지의 예외로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고시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적격심사 방법에 의한 물품을 구매하는 형태가 되므로 지역제한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다음은 제한경쟁 계약에서 중복제한 등에 관한 조항을 알아보기로 하자.

(규)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

1. 실적의 경우에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다만,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 이내로 한다.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③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 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④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먼저 규칙 제25조 제1항의 경우에는 제한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 항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담당자는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 주변여건과 업체들의 실적이나 기술의 보유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제한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령 실적제한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자 . 계약담당자는 제한하려는 규모의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고 또 그로 인하여 경쟁이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한의 규모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실적의 현황등은 관련협회 등을 통하여 파악하면 될 것이다. 제2항 2호에 대하여 살펴보자.

1. 실적의 경우에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위 조문내용의 의미는 실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규모나 양,금액으로 제한이 가능하나 가능한 규모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실적을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시차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의 실적이라도 2년전 실적과 10년전 실적의 가치가 다르고 부대공종이나 주 공종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되어 실적제한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모를 우선적으로 제한토록 하고 있다.

제5항의 규정은 중복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복제한이란 2가지 이상의 제한 요소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예를 들면 지역제한과 기술능력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중복제한에 해당된다. 제한경쟁 입찰에서 중복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즉 중복제한은 지나치게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금지를 명문화 하고 있는 것이다 . 다만 공사의 경우 아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제한의 일부를 허용하고 있다.

먼저,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와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중복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여기서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제한 경쟁운용요령 별표에서 정한 29개 기술공사 2개의 특수공법 공사를 의미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에 해당 된다.

다음에는 공사의 경우로서 지역으로 제한하면서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중에서 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중복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도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음은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면서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중복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제6항의 경우에는 제22조에 의한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제 21조에 의한 제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입찰을 할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음은 제한경쟁입찰을 하면서 계약담당공무원들이나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이 제한하지 말아야할 제한의 유형들을 제한경쟁 운용요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유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당하게 제한 해서는 아니되는 사항 (입찰및 계약집행기준 -제한경쟁 운용요령)

- ① 부당하게 지역업체로 제한
 - 가. 입찰 참가요건을 대표자의 본적,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당해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한 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금지
 -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수(예시 :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 다.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 등에서 당해지역 전문업체에게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하도급 하도록 하고, 자재납품업체까지도 당해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 ② 실적제한시 특수한 기술,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을 하는 사례
- ③ 당해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 사항으로 제한하는 사례
- ④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을 일부 배제하는 사례
 - 예시) ■하수관거공사 발주시 택지조성공사 및 경지정리공사와 관련된 하수관거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발주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조성공사 실적을 제외하는 사례
- ⑤ 특정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실적만 인정하고 다른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등) 발주공사, 민자 또는 민간발주공사, 해외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 ⑥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동일실적에 해당됨에도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⑦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⑧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 ⑨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 ⑩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 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⑪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감리용역이 당해용역의 주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감리용역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은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에 관하여 알아보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경쟁입찰을 시도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도에서는 공사를 금액단위별, 공사내용별로 유형화 하고 해당공사에 참여할수 있는 업체의 자격을 정하여 규모가 큰공사는 지역내 시공능력이 큰 업체, 중소규모 공사는 지역내 중소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수 있도록 할수 있다. 그러나 시도에서는 아직 이러한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는 없다. 처음도입된 제도인 데다가 자칫



업체간 분쟁이나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에서는 동제도가 시행중에 있으며 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자치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유자격자 방식에 의하여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등록한 경쟁참가적격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종합공사의 경우 지역제한입찰 대상공사가 현행 70억원이하에서 100억원이하로 상향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시도단위로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 유자격자 명부에 의하여 규모별·성질별로 입찰을 시행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하기로 하겠다. 